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
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4월 13일
- 회부일자 : 2021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수산식품 거점단지 기능 확대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 분양을 통한 입주업체 모집으로 단지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이루고자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목적 일부 개정
(안 제1조, 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)
-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위원회에서 분양, 편의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
(안 제4조제3호, 안 제4조제7호, 안 제20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)
- 수산식품 거점단지 내 분양을 통한 입주업체 모집 조항 신설
(안 제5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)
- 수산식품 거점단지 사용·수익허가 기간 개정(안 제8조제3항)
-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위원회 임기 및 존속기한 개정 및 신설
(안 제19조제3항, 안 제19조제6항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가. 제출배경

- 지난 2019년 개장한 괴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는 총 사업비 230억원이 투입돼 7만5천㎡ 규모의 단지에 가공·유통시설 3개동, 연구·생산시설 2개동, 사무연구동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으며, 2023년까지 민물고기아쿠아리움 건립 등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
- 개장 당시 수산식품을 생산·가공·유통하고 체험·관광까지 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시설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
- 관광객의 외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금은 사실상 ‘개점 휴업’ 상태가 되었음
- 이에 본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취급품목을 수산식품 외에 농산식품을 추가하고, 임대 형태로만 운영되던 가공시설의 입주방식을 임대 및 분양으로 확대하고자 제안 되었음

[충북 수산식품거점산업단지 현황]

1. 연혁

- '15. 11월 : 기공식 및 공사 착공
- '17. 09월 :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
- '18. 10월 : 공사완공 / 입주업체 선정 완료(가공 4, 식당 6)
- '19. 05월 : 개장식

2. 기본현황

- 추진기간
 - 1단계 2013년~2018년(완료)
 - 2단계 2018년~2023년(추진 중)
- 위 치 : 괴산군 괴산읍 쏘가리길 37
- 사업규모 : 부지 75,623㎡, 시설 6,469㎡
- 총사업비 : 230억원(국비 90, 도비 90, 군비 50)
- 주요시설 : 가공·유통시설 3개동, 연구·생산시설 2개동, 사무연구동



나. 주요 검토내용

- 1) 단지 내 입주업체의 가공·유통 등의 취급품목 다변화(안 제4조제3호 등)
 - 수산물과 수산식품만으로는 다양한 가공품 생산에 한계가 있고, 음식 메뉴 개발 제한으로 손님 유치 등이 어려워 단지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어 농산식품까지 취급 가능하도록 품목을 확대하되
 - 농산식품의 생산·판매·홍보는 「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음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수산식품만 취급	수산식품+농산식품	농산식품 취급 시 운영위원회 사전심의 필요

- 2) 업체의 단지 입주방식을 임대에서 임대 및 분양으로 변경(안 제5조제4항 등)
 - 가공시설 건립 후 입주업체 모집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등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, 유망기업의 유치가 불가하여 단지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어, 임대 뿐 만 아니라 분양을 통해서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시설건립 후 임대방식	시설 건립 후 임대 + 부지분양	가공시설 용지에 한정

- 3) 분양 후 매매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함(안 제5조 제5항)
 - 분양 부지를 매도·매입하는 사람에게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과도한 제한이나 침해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 내용임(법무혁신담당관)

-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·운영과 같은 사무는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급부행정으로서, 그 수혜자를 누구로 할지, 그 수혜의 범위와 조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것임.

- 해당 재량의 행사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, 즉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해 그 수단이 적절한지, 행정목적의 수혜범위에 비해 제한하는 개인적 권리·자유의 침해 정도가 적절한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임
- 이 사안의 경우에는 충청북도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가 수산식품의 생산·가공·판매·연구개발·전시홍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,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지에 분양해 입주하는 자가 단지 지정목적에 적합한 자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,
- 위 단지 조성·운영에 충청북도가 많은 비용과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는 점, 한 번 매도·매입을 잘못하여 단지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게 매매가 된 경우 이를 돌이키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, 이러한 오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부지를 매도·매입하는 사람에게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나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부지 분양의 입주방식 도입 및 농산식품 취급 제한 완화 등으로 단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
- 다만, 수산식품거점단지는 단지를 통한 고부가 수산식품개발, 가공 및 상품화, 유통·판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거점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 촉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바, 농산식품 취급 시 단지조성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